의안번호	2202014
의 뢰 인	강득구의원
회 답 일	2024. 10. 11.
추계번호	24D2188

지방의회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Ⅰ.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1,013억 2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 동안 총 8,884억 8,800만원(연평균 1,776억 9,7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안 제32조)	101,302	194,674	193,643	197,479	201,388	888,488	177,697

주: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Ⅱ.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32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음(제1항) -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함(제2항)	재량규정
2	안 제37조(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지방의회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원 본인,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재직정보, 주식·지분 또는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의 명단, 부동산 및 광업권·어업권, 그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함	의무규정
3	안 제3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제37조에 따른 등록사항을 바탕으로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여 그 의견을 의장, 해당 의원 및 소속 교섭단체 대표의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39조(이해충돌의 신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행정 사무 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의무규정
5	안 제40조(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함	의무규정
6	안 제4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의원이 제37조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를 등록한 경우에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간주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32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
2	안 제37조(사적 이해관계의 등록)부터 제41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까지	×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에게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으로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구축 비용 등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지방의회의 규모, 다른 지방의회 시스템과의 연계 여부 등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이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자세한 사항은 참고자료 참조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 제32조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관한 추계는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두는 경우로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함

❑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시·도의회에는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 시·군·구의회에는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되, 2026년과 2027년 2년에 걸쳐서 증원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연차적 증원안은 다음과 같음

○ 2026년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3 범위에서, 2027년까지는 의원 정수까지 연차적으로 증원

– 현행법령[1]은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시·군·구의회의 경우 7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하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

❑ 추계기간 동안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연봉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가정

○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기본연봉액과 성과연봉액으로 구성되며, 계약기간 동안 기본연봉액에는 변화가 없고 매년 성과연봉액에 변동이 발생하나, 현재로서는 지방의회별 각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성과연봉 등급을 예측할 수 없으므로 2024년도 연봉액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1)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 직급·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 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1. 시·도의 경우: 6급 이하
2. 시·군·구의 경우: 7급 이하
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

❑ 각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늘어남에 따라 업무 공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존의 지방의회 청사의 공간을 활용하는 것으로 가정

❑ 제정안 부칙에서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 기관부담금 요율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치를 적용[2)3)]

○ 기본경비는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에서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준용

○ 자산취득비는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4)]을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시·도의회 및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임

가.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증원 수

❑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정수의 범위에서 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는 경우,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수는 시·도의회 경우는 419명이고, 시·군·구의회의 경우는

---

2)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2024.7.)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공무원임금 평균상승률	2.5%	1.9%	1.9%	1.9%	1.9%	1.9%	1.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공무원 인건비 기관부담금요율 전망(2024.7)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기관부담금	13.11%	13.21%	13.31%	13.40%	13.49%	13.5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2024.7)

(단위: 천원)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1인당 자산취득비	4,806	4,912	5,020	5,125	5,233	5,343

1,558명임

○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함)[5]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현재 시·도의회의원 정수는 877명이며, 시·군・구의회의원 정수는 2,988명임

○ 시·도의회 의원 정수는 총 877명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6]에서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별정직 5급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수 45명을 제외하면 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시·도의회 정책지원관의 수는 419명이고 시·군・구의회의 경우 1,558명임

[표 2]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2024.10. 기준)

(단위: 명)

구 분	지역구 의원	비례대표 의원	의원 정수	현행법에 따라 임용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개정안에 따라 증원 가능한 정책지원관의 수
시・도의회1)	779	53	832	413	419
시·군・구의회	2,602	386	2,988	1,430	1,558

주: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외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 재구성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까지 시·도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3 범위에서, 2027년까지 의원 정수까지 연차적으로 증원할 경우 연차별 증원 인원은 다음과 같음

○ 시·도의회(6급)는 2026년에 211명, 2027년에 208명 채용

○ 시·군·구의회(7급)는 2026년에 811명, 2027년에 747명 채용

---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3항에서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하도록 규정함

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정책연구위원) 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예산·결산 심사,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따른 위원회(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최대 21명의 정책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위원은 임기제 5급 지방공무원 또는 5급 상당의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표 3]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현황(2023.12.31.기준)

구 분	의원정수	2023년 정원	2023년 현원	
서울특별시의회	112명	56명	6급	55명
부산광역시의회	47명	23명	6급	9명
			7급	14명
대구광역시의회	32명	16명	6급	10명
			7급	6명
인천광역시의회	40명	20명	6급	19명
광주광역시의회	23명	11명	6급	11명
대전광역시의회	22명	11명	6급	11명
울산광역시의회	22명	11명	6급	8명
			7급	3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20명	10명	6급	10명
경기도의회	156명	78명	6급	77명
강원도의회	49명	24명	6급	24명
충청북도의회	35명	17명	6급	17명
충청남도의회	48명	24명	7급	24명
전라북도의회	40명	20명	6급	10명
			7급	10명
전라남도의회	61명	30명	7급	30명
경상북도의회	61명	30명	6급	21명
			7급	4명
경상남도의회	64명	32명	6급	20명
			7급	12명
합 계	832명	413명	-	405명

주 1. 의원정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제외한 숫자임
2.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률은 98%임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5항에 따라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6급으로 채용하고 있으나, 대구광역시의회 등 일부 의회의 경우 6급과 7급으로 채용하고 있음

자료: 행정안전부

[표 4]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 현황(2023.12.31.기준)

구 분	의원정수	2023년 정원	2023년 현원
시·군·구의회	2,988명	1,430명	1,199명

주. 시·군·구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채용률은 83.8%임

자료: 행정안전부

나. 인건비 등

(1) 보수 등

○ 제정안에 따라 증원되는 정책지원관을 각 시·도의회에는 6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시·군·구의회에는 7급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 채용한다고 가정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의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반임기제 6급 및 7급 지방직공무원의 2024년 연간 보수는 [표 5]와 같음

- 일반임기제 지방직공무원은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대상자로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에 따른 각각의 연봉하한액의 120%를 적용[7)]
- 수당은 가족수당(배우자와 자녀 1명 기준, 월 70,000원) 및 특수업무수당(6급: 월 60,000원, 7급: 월 50,000원 적용)
- 실비변상은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반영[8)]
- 연가보상비는 개인차가 있으므로 제외함

[표 5] 일반임기제 6급 및 7급 지방공무원 보수: 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봉급	수당	실비변상	합 계
일반임기제 6급 지방공무원	64,958	1,560	3,900	70,418
일반임기제 7급 지방공무원	56,588	1,440	3,840	61,868

자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2024년 연봉액을 기초로 추계기간 동안 연간 보수와 공무원연금 등 기관부담금을 포함한 정책지원관 6급 및 7급 1명의 인건비를 추계하면 다음과 같음

---

7)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5조(신규임용시 연봉책정) ③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 일반임기제공무원 및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사람의 연봉은 별표 13에서 정한 연봉한계액 하한액의 120퍼센트(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별표 11 제3호에 해당하는 별정직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의2의 전문임기제공무원의 경우 130퍼센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책정할 수 있으며, 인력확보에 지장이 없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도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봉은 해당 직무의 종류·곤란성 또는 책임도가 유사한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연봉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한 금액으로 정해야 한다.

8) 정액급식비: 140,000원
직급보조비: 6급 185,000원, 7급 180,000원

- 추계의 전제에서 가정한 바와 같이 추계기간 동안 정책지원관의 연봉액은 2024년 연봉액에 국회예산처 전망 공무원임금 평균 상승률을 적용
- 인건비에 연동되는 공무원연금, 건강보험 등 기관부담금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연도별 부담률을 적용

[표 6] 정책지원관(6급 및 7급)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6급	보 수	73,119	74,508	75,924	77,367	78,837
	기관부담금	9,659	9,917	10,174	10,437	10,706
	소 계	82,778	84,425	86,098	87,804	89,543
7급	보 수	64,241	65,462	66,706	67,973	69,264
	기관부담금	8,486	8,713	8,939	9,170	9,406
	소 계	72,727	74,175	75,645	77,143	78,67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기본경비

○ 지방자치단체의 2024년 기능별 주요예산 편성 현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서 기본경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인력운영비(인건비)의 25.8%[9]

○ [표 6]에서 구한 인건비에 지방자치단체 평균 기본경비 비율을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추계

[표 7] 정책지원관(6급 및 7급) 1명 당 기본경비: 2026~2030년

(단위: 천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6급	21,358	21,782	22,213	22,653	23,102
7급	18,764	19,137	19,516	19,903	20,297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9) 행정안전부가 발간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예산액 중 인력운영비가 12%, 기본경비등이 3.1%로 기본경비등의 비율은 인력운영비의 25.8%임

다. 자산취득비

○ 추계의 전제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 1명 증원에 따른 자산취득비는 2026년과 2027년에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추계의 전제에 따라 2026년까지는 시·도의회 의원 정수의 4분의 3 범위에서, 2027년까지는 의원 정수까지 연차적으로 아래와 같이 증원

- 시·도의회의원은 2026년에 211명, 2027년에 208명 채용
- 시·군·구의회의원은 2026년에 811명, 2027년에 747명 채용

○ 국회예산정책처 정부부처 1인당 자산취득비 전망을 적용하였을 때, 1인당 502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표 8] 자산취득비: 2026~2030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시·도의회의원	1,059	1,044	0	0	0	2,103
시·군·구의회의원	4,074	3,749	0	0	0	7,821
합 계	5,133	4,793	0	0	0	9,924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 결과

❑ (일부추계) 추계 결과, 제정안에 따라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정책지원관을 증원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시·도의회는 2,074억 3,800만원, 시·군·구의회는 6,810억 4,9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표 9] 정책지원관 증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6급	1인당 인건비 등 (A, 천원)	82,778	84,425	86,098	87,804	89,543	-
	1인당 기본경비 (B, 천원)	21,358	21,782	22,213	22,653	23,102	-
	1인당 인건비 등 및 기본경비 (C=A+B, 백만원)	104	106	108	110	112	-
	정책지원관 수 (D, 명)	211	419	419	419	419	-
	소 계 (E=C×D, 백만원)	21,972	44,500	45,382	46,281	47,198	205,335
	자산취득비 (F, 백만원)	1,059	1,044	0	0	0	2,103
	합 계 (G=E+F, 백만원)	23,031	45,544	45,382	46,281	47,198	207,438
7급	1인당 인건비 등 (H, 천원)	72,727	74,175	75,645	77,143	78,670	-
	1인당 기본경비 (I, 천원)	18,764	19,137	19,516	19,903	20,297	-
	1인당 인건비 등 및 기본경비 (J=H+I, 백만원)	91	93	95	97	98	-
	정책지원관 수 (K, 명)	811	1,558	1,558	1,558	1,558	-
	소 계 (L=J×K, 백만원)	74,199	145,380	148,260	151,197	154,190	673,228
	자산취득비 (M, 백만원)	4,071	3,749	0	0	0	7,821
	합 계 (N=L+M, 백만원)	78,270	149,130	148,260	151,197	154,190	681,0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Ⅳ. 부대의견

❑ 본 추계 결과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Ⅴ.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지수현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지수현	02-6788-4831	zisu37@nabo.go.kr

[참고자료] 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미첨부 사유

❑ 지방의회의원에게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 적용

○ 지방의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공직자[10]이므로, 임기 개시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용을 소속기관 장에게 제출[11]하고, 자신 또는 배우자 등이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와 금전 거래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12]하여야 하는 등 공직자 이해충돌 제도의 적용을 받음

○ 제정안은 지방의회의원으로 하여금 당선인으로 결정된 30일 이내에 본인과 가족의 주식·부동산 등 이해관계에 대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안건심사·국정감사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원에 대한 이해충돌방지제도[13]와 같이 강

---

10)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

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8조(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 ① 고위공직자는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기 전 3년 이내에 민간 부문에서 업무활동을 한 경우, 그 활동 내역을 그 직위에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과 그 업무 내용
2. 대리, 고문·자문 등을 한 경우 그 업무 내용
3.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⑤ (생 략)

12)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9조(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① 공직자는 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관계사업자(자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공직자 자신의 직무관련자(「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다는 것을 사전에 안 경우에는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등,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등이나 그 밖의 금융회사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토지 또는 건축물 등 부동산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개모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분양이나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재산상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의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하여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직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있었음을 사후에 알게 된 경우에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④ (생 략)

13) 「국회법」 제32조의2(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제32조의3(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 제32조의5

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지방의회의원에게 적용하려는 것임

○ 제정안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이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 이해충돌의 신고 등을 하는 경우 등록·신고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구축비용[14],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업무 증가에 따라 운영비용 증가[15]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회의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지방의회별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수 등을 예측하기 어렵고, 지방의회의 규모, 다른 지방의회 시스템과의 연계 여부[16] 등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시스템 구축비용이 달라지므로, 현 시점에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가 곤란함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제32조의6(「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적용 특례)

14) 국회의 경우, 2021년「국회법」의 개정으로 이해충돌방지규정이 도입됨에 따라 7억 8,600만원을 투입하여 '국회 이해충돌방지시스템'을 구축하였음

15) 윤리심사위원회는 현행「지방자치법」제66조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음

16) 지방세정보화시스템, 주민감사청구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유사한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 공통으로 구축하는 사례가 많음